

## 자유와 재산권 (On Liberty and Property Rights)

박 상 수\*

### 目 次

- I. 서론
- II. 자유와 재산권의 개념
- III. 자유와 사유화의 중요성
- IV. 사유화와 자유의 상충
- 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자유와 재산권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각각의 개념의 중요성도 아울러 검토하고, 두 개념간의 상충관계도 분석한다. 특히 로크의 단서를 중심으로 자유와 재산권 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하면서, 로크가 재산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시키기 위한 그의 단서의 취지를 검토한다.

자유권은 대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런 정의는 재산권과 관련해선 한 사람의 자유권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의 범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에게 자유에 관한 동등한 자연적 권리가 주어졌다는 주장이 건전하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런 주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로크의 단서는 이런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크는 분명히 종획운동과 관련된 논쟁을 인식하였을 것이며, 그의 단서는 바로 부 혹은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로크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이라는 단서가 충족될 때에 특정인의 사유화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단서가 충족이 된다면 무한한 축적도 가능하다고 본다.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로크는 과도한 부의 축적과 빈부격차를 화폐의 도입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화폐의 도입은 사람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런 화폐의 도입이 부의 과도한 축적을 가능케 하는데, 이것 역시 사람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로크가 살았던 시대에는 제도 개혁이라는 혁명적인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만약 로크가 J.S. 밀과 같은 급진적 개혁이 논의되던 시기에 살았다면, 아마도 그는 밀과 동일한 개혁정책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주제어 : 자유, 재산권, 로크

## I. 서 론

자유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가장 중시한다. 그들의 자유는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며, 보편적으로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 소극적 자유는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반면에 마르크스도 이상으로서 자유를 중시한다. 그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의미하는데, 통상 능력으로서의 자유라고 지칭된다. 행동할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할 수 없다면, 그런 자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두 가지 자유는 모두가 중요한 자유이다.

자유권은 대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A. Fressola, 1981, p.316)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자유의 신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특히 어떤 사람이 특정한 것을 하려면 어떤 사물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자유는 어떤 사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특히 개개인의 사유화와 부의 축적은 다른 한편으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냉고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로크이다. 그는 개개인의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단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로크의 단서이다.

본 논문은 자유와 재산권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각각의 개념의 중요성도 아울러 검토하고, 두 개념간의 상충관계도 분석한다. 특히 로크의 단서를 중심으로 자유와 재산권 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하면서, 로크가 재산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시키기 위한 그의 단서의 취지를 검토한다. 우선 II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자유와 재산권의 개념을 간략히 분석한다. III에서는 자유와 재산 사유화가 왜 중요한가를 검토한다.

IV에서는 재산 사유화가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현상을 로크의 단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II. 자유와 재산권의 개념

### 1. 자유의 개념

#### (1) 자유의 유형

자유는 다양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구분하여 보자.(Hayek, 1960, pp.11-6) 자유 하면 우선 정치적 자유(potitical liberty)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와 관련된 투쟁은 아마도 대부분 정치적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될 만큼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한 개념이다. 정치적 자유는 정부의 선택, 입법, 행정의 관리 등에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며,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물론 여기서의 정치적 자유는 혐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사실 정치적 자유는 개인적 자유를 전제했을 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와 별개의 개념은 아니며, 정치적 자유에는 집단적 개념만이 아니라 개인적 개념까지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치적 투쟁의 대상은 개인적 자유까지 포함한다.

둘째로 내적 자유(intrinsic liberty)를 들 수 있다. 내적 자유는 순간적 상황보다는 자신의 검토된 의지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지칭하는데, 주로 개인의 이성이나 신념에 의해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내적 자유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능력(power)으로서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어떤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나타낸다. 여기서의 자유는 행동의 자유와 더불어 능력까지 함축하는 자유의 개념이다. 예컨대 하늘을 날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부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캐딜락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능력으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능력으로서의 자유는 다음에 언급되는 개인적 자유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자유(individual liberty)를 들 수 있다. 개인적 자유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데, 보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자유는 바로 개인적 자유이며, 우리가 통상 자유라고 말하면 그것은 통상 개인적 자유를 의미한다.

## (2)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는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다. 소극적 자유는 F.A. Hayek(1960)의 주장처럼 평화, 고요, 안전과 같은 유형의 개념으로,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 고요를 시끄러움이 “없는 상태”, 안전을 위협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는 것처럼 정의될 수 있다.(p.19) 즉 소극적 자유는 속박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즉 강제를 수반하는 속박의 부재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즉 능력으로서의 자유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의만으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J. Feinberg(1973)는 자유에 대비되는 속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하려 시도한다. 그는 속박을 적극적인 속박과 소극적인 속박으로 구분한다.(pp.18-21) 예컨대 돈, 힘, 기술 등의 부족은 특정인이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제약요인들은 특정한 것이 없다(일종의 不在)는 것이므로 소극적인 것들이며, 또한 그것들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속박이다. 이런 요인들을 소극적 속박이라고 한다. 반면에 겨누어진 총, 창살이 처진 창문, 형법 등은 특정인이 어떤 것을 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한다. 이런 요인들은 명시적으로 혼존하는 장애조건이므로 적극적인 속박이다. J. Feinberg는 소극적 자유를 적극적 속박의 부재로, 적극적 자유를 소극적 속박의 부재로 대략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의에 따르다면 소극적 자유는 외부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설정된 장애요인들, 즉 주로 타인이나 제도에 의한 강제를 수반하는 (적극적) 속박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소극적 자유의 대표적인 사례는 J.S. Mill(1859)에 의해 제시된다. 그에 따르면 강제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방지하는 것”(p.13)이며, 국가는 개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개개인이 자신들의 일들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개인의 행동이 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국가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데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즉 장애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속박의 부재, 예컨대 돈, 힘, 기술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적극적 자유의 대표적인 개념은 소외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로 정의할 수 있는 마르크스적 자유일 것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상태”(Marx, 1875)로 묘사되는 공산주의의 단계는 적극적 자유가 최상의 상태로 실현되는 경제이다. 이런 경제상태는 인간이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관계까지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지식이 발전한 경

제이며, 이런 경제에서 인간은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자연과 사회생활의 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유롭다(Burkitt, B., 1984, p.38).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동시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자유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까지 두 가지 자유가 갈등을 일으킨다. 예컨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식량을 사고자 한다. 식량 사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식량을 살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적극적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자유로부터 결과하는 사회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소극적 자유로부터는 개인적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는 자유주의 사회가, 반면에 마르크스적인 적극적 자유로부터는 개인적 자유가 상당히 규제받는 전체주의적 사회가 유도될 수 있다.

## 2. 재산권의 개념

### (1) 권리의 속성

재산권은 권리의 한 종류이며, 권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동시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L.C. Becker(1977)는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권리의 존재는, 행위에 대한 요구가 실행되어야 하거나 혹은 강제되어야 하는 경우 그 행위 혹은 자체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필요한 성과를 추출하거나 혹은 그런 성과 대신에 보상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권리-소유자)이 행위에 대한 요구(claim)를 갖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무-부담자)으로부터의 자체(forbearance)를 보유하는, 그런 상태의 존재이다.”(p.8)

이런 권리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로부터 추출되는 내용들이며, W.N. Hohfeld의 권리-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범 개념에 따르면, 그 권리-관계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L.C. Becker, 1977, pp.11-4) 첫째로, 권리 소유자인 어떤 사람(혹은 단체)이 의무 부담자인 다른 사람에 대해 요구를 갖는 요구-권리(claim-right)가 있으며, 그리고 둘째로, 권리 소유자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주어진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liberty)가 있다. 한 사람의 자유 권리의 존재

는 단지 다른 사람의 요구 권리의 부재를 수반한다. 셋째로, 의지를 실현하려는 본인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관계(권리와 관련하여)를 변경시킬 수 있는 법적인(그리고 도덕적인) 능력(ability)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은 다른 사람의 책임만을 수반하며,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다. 넷째로, 면책(immunity)은 권리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능력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권리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유와 능력 그리고 면책은 사실상 요구-권리에 보강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의 본질은 요구-권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권리의 본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와 능력이 권리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권리 소유자는 특정한 것을 할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 (2) 재산권의 개념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개념인 재산권(property rights)으로 넘어 가자. 여기서 다루게 되는 재산권은 사유재산권을 의미하며, 그리고 소유의 권리(the rights of ownership)이다. 재산권은 권리의 한 종류이며, 모든 재산권은 권리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종류가 대단히 상이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재산권은 물질적인 혹은 비물질적인 사물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인의 재산적인 권리이며, 보편적으로 “사용의 권리, 이전의 권리 그리고 소유된 물건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되는 어떤 것”(ibid., p.18)을 말한다. 이런 재산권은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A.M. Honore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L.C. Becker는 완전한 소유권(full ownership)을 구성하는 11가지의 권리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ibid., p.19)

소유된 사물의 배타적인 물리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소유의 권리, 사물을 개인적으로 향유 및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권리, 사물이 사용되는 방법과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관리의 권리, 사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소득의 권리, 사물을 양도하거나, 소비, 낭비하거나 혹은 수정 및 파괴할 수 있는 자본의 권리, 물수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안전의 권리, 사물을 유증할 수 있는 전달의 능력, 특정인이 무한히 소유할 수 있는 만료의 부재,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방식으로 대상물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의무를 나타내는 유해한 사용의 금지, 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물이 물수되어야 하는 책임을 나타내는 강제집행의 책임, 소멸된 소유권의 복귀를 규제하는 규칙의 존재를 나타내는 잔여재산의 성격 등이 그것이다.

이런 권리 내용을 전부 보유하는 소유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대상물의 소유권은 이들 내용 중 일부만을 그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현실의 재산권은 이런 구성 요소 중 하나 혹은 여러 가지를 생략한 제약된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 III. 자유와 사유화의 중요성

#### 1. 자연권으로서의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

자연권(natural rights)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언급될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등장하는 권리”(L.C. Becker, 1977, p.16)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설계된 실제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는 구분된다. “사회 안정 혹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정당화되는 권리들이 자연권이다-비록 최소 필요의 목록이 인간이 창조한 제도의 특별한 내용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고 할지라도.”(ibid., p.16)

자연권은 대체적으로 위와 같이 정의내릴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자연법에서 근원한다고 주장되곤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연법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자들은 자연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규정하려고 노력한다. 대체적인 견해는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최종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이상 혹은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이상이나 표준은 과거에는 자연이나 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법학자들은 합리적 존재 및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nature)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자연법과 자연권에 관한 개관적인 설명으로는 M. MacDonald, 1949, pp.21-40 참조)

그러면 자연법과 자연권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자연법은 채무자이든 채권자이든, 주인이든 노예이든, 구속되었든 자유롭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현재에 살고 있든 미래에 살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런 자연법과 자연권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고 인간의 본성에 관한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궁극적 원리를 추출하며, 그 원리에서 자연권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J. Locke는 자연권으로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였는데, 미국의 독

립선언서에서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가 제시되었고, 프랑스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의 저항에 대한 권리가 제시된다. 최근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권리들이 훨씬 더 많이 제시되곤 한다.

대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생명권에 대해선 거의 이의가 없는 것 같다. 로크는 정부에 관한 둘째 강의에서 “자연 상태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의무를 지우면서 자연 상태를 규제하는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연법인 이성은, 그 법만을 참고할, 모든 인류에게 모두가 동등하고 독립적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혹은 재산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J. Locke, 1690, II, §6: 강조는 필자의 강조)고 주장한다. 로크는 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및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생각하고 있다.

동일한 곳에서 로크는 “모든 사람 각자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여야 하며..... 따라서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그 자신의 보존이 경쟁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는, 가능한 한, 나머지의 인류를 보존해야 하며, 그리고 그는, 범죄자에게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 한, 생명 혹은 생명의 보존에 공헌하는 것(자유, 건강, 자손, 혹은 다른 좋은 것들)을 앗아가거나 손상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ibid., II, §6)

로크는 생명권을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의무라고도 생각하고 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경쟁적이 아닌 한, 다른 사람의 생명의 보존도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생명의 보존에 공헌하는 것, 즉 자유, 건강, 자손, 재산 등을 앗아가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환언하면 그는 자유, 건강, 자손 및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생명권에서 파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관심사인 자유와 재산은 생명권 다음의 중요성을 갖는 권리들이다. 자유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느 개념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느냐에 따라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로 엇갈리게 된다. 다음 항에서는 자유의 중요성을 검토해 본다.

## 2. 자유의 중요성

자유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소극적 자유를 지칭한다.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속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적 제약 혹은 자연법칙에 기인하는

단순한 무능력과 관련되는 속박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런 무능력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회제도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무수한 속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찍이 개인 심리학자 아들러(Adler, A., 1931)는 인간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열등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가지 속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 개인은 열등감에 빠진다. 이런 열등감을 회피 혹은 우회하려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유발하지만, 이런 열등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다.

예컨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다는 무력감, 즉 자연에 대한 열등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행기 혹은 항글라이더를 발명하게끔 유도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자유가 정치적 제도에 의하여 제약받을 때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아들러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속박에 의해 유발되는 열등감의 극복을 중시하고 있다. 즉 열등감의 극복을 인류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유는 왜 필요한가? 즉 자유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자유를 중시하는가? 흄볼트(von Humboldt), 밀(J. S. Mill), 흉하우스(L. T. Hobhouse) 등의 대략 일치된 견해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폐락이나 수동적인 만족이 아니라 성장과 자기실현의 역동적 과정이므로 자유가 그런 최고의 선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밀(Mill, J.S., 1859, p.65)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각자가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을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법과 관습 하에서 규제하는 것은 인간 각자의 개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천재성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관습이나 일반 행위 규범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그들의 천재성을 억압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은 그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개성의 적극적 개발을 가능케 하는 길이며,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았다.

하이에크(Hayek, F.A., 1960, pp.22-38)도 자유주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자유가 문명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명을 명시적 지식(예컨대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처럼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지식), 암묵적 지식(노하우, 손재주, 기능처럼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지식)의 성장으로 간주하면서 개인적 자유가 개개인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부여하며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인 간에 분산된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 가능케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식의 성장을 더 빠르게 하고 나아

가서는 인류 문명을 더 진보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학자에 따라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논리적인 기초가 다소 다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적 자유의 허용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에 불가결하다고 본다. 이런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밀의 언어로 개성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예컨대 아들러의 언어로 열등감의 극복이라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문명의 발전이 가속화된다.

일반적으로 자유가 다른 어떤 것과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선 자유가 중요한 것의 전부일 수도 있다. 마르크스의 이상과 같이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여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 정도가 된다면, 개개인의 자유는 어떤 것과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인간이 사회와 자연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문명의 단계에서는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시킬 수도 있으며, 이런 타인의 자유의 구속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라는 가치판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재산의 사유화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 3. 재산의 사유화의 중요성

인류에게 주어진 지구 자원은 무소유인가 혹은 공유로 주어졌는가? 대단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어느 것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얻어지는 결론은 대단히 상반되는 사상으로 귀결한다. 지구의 자원을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소유되지 않는 자원의 사유화는 정당성이라는 도덕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특정인이 토지나 자연의 생산물을 사유화하는 정당한 근거만 제시된다면, 그때 사유화는 자원의 보존이나 생산량의 증가에 있어서 탁월한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다.

반면에 지구의 자원이 공유로 주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사유화는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A. Gibbard(1976)는 자연적인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평등주의적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모든 사람 각자는 모든 사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p.24)고 가정하는데, 이런 가정은 지구의 자원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용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를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즉 다른 사람들의 사용의 기회의 박탈은 가능하지만, 권리의 박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ibid., p.25)

이런 가정 하에서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토지를 사유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개간하고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리고 그 토지에서 곡식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확된 곡식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그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유된 재산이다. 곡식을 수확한 그 사람은 그 곡식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고, 그 중 일정한 비율만이 자신의 소유이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비율로 분배받을 것이다.

A. Gibbard(1976)는 “불평등한 재산권을 허용하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로 유도될 것이다”(p.25: 강조는 필자의 강조)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토지를 개간하고 정리하여 곡식을 수확하려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토지의 자연적인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계를 이어갈 것이며, 그들의 생활수준은 원시생활이거나 이에 근접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 사유재산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재산권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며, 그리고 그런 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장애인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권 혹은 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나누어줄 것을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A. Gibbard는 복지의 권리(?)를 유도하고 있다.(ibid., p.27)

## IV. 사유화와 자유의 상충

### 1. 로크의 단서

지구에 자원이 풍부하다면 각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물들을 마음대로 사유화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유화할 수 있는 사물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으므로 그들은 사유화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고 또한 특정인의 사유화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로크는 사유화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J. Locke, 1690, II, §27: 강조는 필자의 강조)이라는 단서를 설정하고 있다. 그는 자연의 생산물이든 토지 자체이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조건에서 노동을 투입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 사유화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로크는 이런 단서의 내용을 정부에 관한 둘째 강의 §33에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

다. “여전히 훌륭하면서도 충분한 것이 남겨져 있으며 그리고 아직 제공받지 못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남아 있으므로, 토지의 어떤 일부를 개간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이런 사유화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도 아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올타리 둘러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적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을 남긴 그는 전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과 같이 좋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어떤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겨진 동일한 물의 전체 강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한 모금 마셨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손해 입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양자를 위해서 충분한 것이 존재하는 토지와 물의 경우는 완전히 동일하다.”(강조는 필자의 강조)

로크는 신이 인류에게 지구를 공유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ibid., II,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인류 전체의 “승낙 없이”(ibid., II, §28) 특정인이 토지나 토지의 생산물을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이라는 로크의 단서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단서의 충족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원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다. 즉 로크가 예시하는 것처럼 토지와 물이 무한대로 존재하여 특정인이 사유화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사유화하거나 혹은 사용하는 데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위 향상이 항상 가능하다.

로크는 비록 지구의 자원이 무한대로 존재한다고 하여도 인간의 탐욕은 그 자원을 희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다. 특히 토지의 경우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종획운동으로 인하여 토지의 부족이 현실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로크에 따르면 “그런 올타리 치기 이후의 나머지는, 그들 모두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세계 공유지의 시작과 첫 정착에서는 그것은 전혀 달랐다.”(ibid., II, §35) 즉 처음에는 토지가 희소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희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유지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 로크의 단서와 재산의 규칙

비록 토지나 자원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경과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나 자원이 희소할 수밖에 없다. 자원이 희소하게 되었을 때 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로크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나름대로의 재산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재산 규칙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내가 강조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기는 하지만, 본인은 용감하게 이것을 확인한다 - 동일한 재산규칙, 즉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세계에서 적용될 것이다.”(ibid., II, §36; 강조는 필자의 강조)

인간의 탐욕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탐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떤 자원도 희소하게 되며, 그에 따라 로크의 단서도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로크는 바로 이런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기 위하여 재산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재산의 규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된다면, 로크의 단서가 토지와 다른 자원에 대해서도 충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재산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로크가 무제한적인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재산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로크의 견해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와 화폐가 사용되는 경제로 분류하여 언급될 필요가 있다. 우선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 특히 자급자족 경제체제에서 로크의 견해를 살펴보자.

우선 도토리, 사슴고기 등과 같은 자연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그것(자연의 생산물)이 상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생활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그만큼을 그는 그의 노동에 의해서 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엇이든 그의 뜻을 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ibid., II, §31; 강조는 필자의 강조) 재산의 크기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만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유사한 내용은 §37에도 있다)인데, 사실 자급자족 경제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남는 것은 결국 부패하여 없어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노동을 투하하는 것이 되며, 이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연의 생산물을 습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물물교환경제에서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본질적인 면에선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잉여생산물을 다른 물건과 교환함으로써 그 잉여생산물을 부패하여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면, “그는 어떤 침해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공동 재산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어떤 것도 부패하여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재화의 어떤 부분도 파괴하지 않았다.”(ibid., II, §46) 물론 교환해서 얻은 물건을 부패시킨다면 그것은 분명히 타인의 뜻을 파괴시키는 것이지만, 보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여 얻는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재산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잘고, 씨 뿌리고, 개간하고, 경작하며, 그리고 그 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토지, 정확히 그만큼의 토지가 그의 재산이

다.”(ibid., II, §32: 강조는 필자의 강조) 자연의 생산물에 대한 재산 규모의 제한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로크는 토지의 부족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 토지가 부족하다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토지 부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로크는 창세기 13장 5절과 36장 6절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토지의 발견이 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ibid., II, §38) 아마도 신대륙으로의 이주를 염두에 둔 내용인 것 같다.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필요 이상의 토지의 소유는 소유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자연의 생산물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필요 이상을 소유한 경우 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더 노동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생산물이 생산되지만, 잉여생산물을 부패될 것이다. 그리고 물물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잉여생산물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다고 해도 필요 이상을 가지는 것은 결국 부패로 귀결되면서 낭비될 것이다.

### 3. 화폐와 재산 규칙

지금까지는 화폐가 없는 경제를 다루었으나, 화폐가 도입되면서 논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로크는 “인간이 썩히지 않으면서 보유할 수 있으며, 상호 승낙에 의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유용하지만 부패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과 교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사물”(ibid., II, §47)을 화폐로 정의했으며, 이런 화폐는 재산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ibid., II, §48)

재산축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로크는 “그(어떤 사람)의 공정한 재산의 경계를 넘는 것은 그의 소유의 과다에 있지 않고, 어떤 것을 쓸모없게 부패시키는 데에 있다”(ibid., II, §46)라고 주장하면서,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호의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금과 은은 사람들의 승낙에 의해서만 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으면서 저장할 수 있는 과다한 금과 은 - 이런 금속은 소유자의 손에서 부패하지도 부식하지도 않는다 - 을 교환으로 수령함으로써, 압목적이면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자신이 토지의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토지를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들이 토지의 불비례적이며 불평등한 소유에 동의했다는 것은 명백하다”(ibid., II, §50: 강조는 필자의 강조)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토지의 불평등한 소유가 화폐의 도입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토지의 과다 보유는, 그런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부식되거나 부패되어서 낭비되지 않는다면, 신의 섭리에도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몫을 침해하지

도 않으며, 그에 따라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로크는 결론적으로 "(소유할) 자격에 관해서 다를 이유가 전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그것(노동)이 제공하는 소유의 과다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있을 수 없다"(ibid., II, §51)고 주장하면서, 재산권의 절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로크는 원칙적으로 재산 규칙이 지켜지기를 원했으며, 그럴 경우에 로크의 단서가 상당 부분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의 단서의 충족은 자급자족 경제뿐만 아니라 물물교환 경제에서도 가능하였다. 이런 경제에서는 개개인은 자신이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보유할 것이므로, 각 개인이 과도한 토지를 보유하거나 혹은 그런 토지로부터 과도한 생산물을 수확하거나 혹은 자연에서 과도한 생산물들을 추출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그런 낭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크의 단서는 확실히 충족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폐의 도입은 상황을 급변시키고 있다. 화폐는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축적이 가능하며, 과도한 토지의 소유와 이용, 그리고 자연의 생산물의 과도한 수확이나 수집은 화폐로 전환되어 축적될 수 있게 된다. 소위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화폐의 발견은 로크의 단서의 충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로크는 "암묵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화폐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궁극적으로 인간들 간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 로크의 취지이다.

로크가 자신의 "정부에 관한 두 가지 논문"(1690)을 저술하였던 시기가 종획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종획과 관련된 논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C.C.. Ryan, 1977, p.138) 따라서 그의 단서는 재산 취득에 관한 계약으로 생각했던 것 같으며, 당시의 부의 과도한 편중 현상을 응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적인 경향을 가졌고, 그 현상을 제도적인 문제로 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그런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만 이야기하였을 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대략 2세기 후에 J.S. 밀은 로크의 재산권에 관해서 대부분 동의하면서, 로크의 견해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인 토지재산에 관해서 공리주의적인 급진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토지의 경우 명시적인 선(positive good)을 생산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배타적인 권리도 허용되어선 안 되며."(J.S. Mill, 1896, p.297) 그리고 특히 "토지가 경작될 의지가 없을 때, 그것이 어떻든 사유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훌륭한 이유도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ibid., p.298)

그는 결론적으로 "토지와 관련해서, 그(소유주)가 토지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가 절

제하는 것 모두에서, 그는 그의 이해관계와 쾌락을 공공선과 조화롭게 만들도록 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경우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합법적으로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도록 강제 당해야 한다. 일반 인류는, 그들이 나머지에게 떼어준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그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흙에 대한 인류의 원초적인 요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ibid., p.298; 강조는 필자의 강조) 즉 공공 목적을 위해서는 토지의 수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작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토지는 얼마든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재산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원리가 토지에 대해선 적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밀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토지 문제에 대해선 “어떤 새로운 조치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ibid., p.295)”고 언급하고 있다.

#### 4. 사유화와 자유

로크는 인간은 각자가 자신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존이 다른 인류의 생존과 경쟁이 안 될 때에는 나머지 인류를 보존시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탐욕은 무한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희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 로크의 단서는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하여 자원의 사유화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화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로크의 이런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자유와 재산권 간의 상충관계를 검토하여 보자.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그 결과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앞에서 보았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는가?

J.S. 밀, 하이에크, 노직 등의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항상 소극적 자유를 이야기한다. 소위 도둑질, 살인, 폭행, 사기 등과 같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비행기를 연구실에서 발명하고, 그것을 제작하고, 그리고 시험 비행을 할 자유를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자유가 제약을 받는다면, 인류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견해의 기저에는 재산의 사유화를 지지하는 논리가 존재하며, 특히 부와 소득의 불공평화에 대해서 미화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예컨대 J.S. 밀은 “노동자들이 그 조상들이 저축한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그 조상들이 저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노동자들이 더 부유해졌다는 것도 진실이다. 노동자들은, 비록 유증 받은 사람들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유하고 있다"(ibid.. p.279; 강조는 필자의 강조) 주장하면서, 현재 제도를 옹호하면서, 부의 불평등을 합리화한다.

하이에크도 그의 자유헌정론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이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문명의 발전이 있었으며, 이런 혜택을 가난한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비행기와 같은 것은 처음에 부자들의 모험에서 시작하고, 처음에는 부자들만이 탈 수 있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요금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즉 처음에는 부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치재이었으나, 나중에는 기술진보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현재의 일반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 세대의 후생의 중대, 소위 문명의 발달에 따른 혜택의 증대를 위해서 회생당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Hayek, F.A., 1960, pp.42-5)

이때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선 문명의 발전은 고사하고, 시장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분명히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도둑질이나 강도짓 혹은 살인과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없는 상태로서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 특히 자본가와 부자들은 정말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한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하는 데에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면 무한한 소극적 자유를 누린다. 소극적 자유에 관한 한 그들은 자본가와 부자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 자유를 실제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커다란 장애에 봉착한다.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선 그들은 자신의 소득이나 부에 의해서 행동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들의 실제 자유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정확히 비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궁극적으로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특히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자본가 혹은 가진 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사실상 적극적 자유이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의 적극적 자유는 극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로크의 단서는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의 자유, 특히 그들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적극적 자유가 충분한 크기로 보장되는 조건에서 능력 있는 자들의 무한한 자본축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로크는 그의 정부에 관한 강의를 출간하던 시기의 종획운동을 직접적으로 목격하

였을 것이며, 이런 운동의 참혹한 결과도 목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인간 자신의 보존을 인간의 의무로 보면서, 자기 자신의 보존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나머지 인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J. Locke, 1690, II 6) 로크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가난한 자 혹은 능력이 없는 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염두에 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인들의 사유화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뜻을 남겨 두어야 개인의 사유화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VI. 결 론

자유권은 대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런 정의는 재산권과 관련해선 한 사람의 자유권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의 범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에게 자유에 관한 동등한 자연적 권리가 주어졌다는 주장이 전전하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런 주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소극적 자유를 중시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행동의 자유는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자유이다. 정치활동이나 언론에서의 자유는 사실상 소극적 자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와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 소극적 자유가 실행되어야 한다면 그 자유는 사실상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비행기를 만들 자유, 실험실에서 즐기세포를 연구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런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의 재산이 말하여 준다. 이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행동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재산 혹은 능력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측정될 수 있다면)에 비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로크의 단서는 이런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크는 분명히 종획운동과 관련된 논쟁을 인식하였을 것이며, 그의 단서는 바로 부 혹은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로크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이라는 단서가 충족될 때에 특정인의 사유화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단서가 충족이 된다면 무한한 축적도 가능하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과도한 부의 축적과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로크는 이런 현상을 화폐의 도입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화폐의 도입은 사람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런 화폐의 도입이 부의 과도한 축적

을 가능케 하는데, 이것 역시 사람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로크가 살았던 시대에는 제도 개혁이라는 혁명적인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만약 로크가 J.S. 밀과 같은 급진적 개혁이 논의되던 시기에 살았다면, 아마도 그는 밀과 동일한 개혁정책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 Abstract

This essay attempts to consider the notion of liberty and property rights, and then to analyze the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property rights. Especially it try to study the conflict in Locke's proviso, and at the same time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Locke's proviso purporting to insure the moral justification of private appropriation.

The right to liberty may be defined as "a right to do anything except coerce or constrain someone else." On this definition, particularly respecting the property rights, the extension of one's freedom can give rise to the diminution of another's. If an argument that each person is given a equal natural right to liberty is sound and true, the moral justification of private appropriation is influenced largely by this argument.

In this respect, Locke's proviso has many implications. Perhaps Locke might recognize the disputes respecting the enclosure movement, and hence try to have in mind the persons who had no sufficient wealth or property. Locke thinks that someone's appropriation is morally justified when his proviso, "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is satisfied, and then the infinite accumulation is morally possible.

Locke explains the excessive wealth accumulation and the gulf between rich and poor by the introduction of money, which he thinks is available by tacit consent among persons. He suggests money may give rise to excessive wealth accumulation, which is possible by tacit consent. Maybe Locke has no revolutionary idea about systematic reform. If he lives in J.S.Mill's period, he may suggest the same radical policy as J.S.Mill's.

Key words : Liberty, Property Rights, Locke's proviso

## 참고문헌

- Adler, A.(1931). What Life Should Mean to You(설영환 역, 『아들러의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87)
- Becker, L.C.(1977). Property Rights: Philosophical Foundations, Routledge & Kegan Paul.
- Burkitt, B.(1984). Radical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the Alternative Economics, Wheatsheaf Books Ltd.
- Feinberg, J.(1973). Social Philosophy(문창옥 역: 『사회철학』, 종로서적, 1992), Prentice -Hall.
- Fressola, A.(1981), "Liberty and Propert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18, pp.315-22.
- Gibbard, A.(1976), "Natural Property Rights", Nous, pp.77-86. Reprinted in Left-Libertarianism and its Critics: the Contemporary Debate(eds., P. Vallentyne and H. Steiner, Palgrave, 2000), pp.23-30.
- Hayek, F.A.(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Routledge & Kegan Paul.
- Locke, J.(1690).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T.I.Cook, Hafner Press, 1947.
- MacDonald, M.(1949), "Natural Rights", i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947-48, Aristotelian Society, pp.35-55. Reprinted in Theories of Rights(ed. J.Waldr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21-40.
- Marx, K((1875).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http://www.marxists.org/>
- McCloskey, H.J.(1965), "A Critique of the Ideals of Liberty", Mind, pp.483-508.
- Mill, J.S.(1859). On Lib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896),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D. Appleton.
- Narveson, J.(2001). The Libertarian Idea, Broadview Press.
- Nozick, R.(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lackwell.
- Ryan, C.C.(1977), "Yours, Mine, and Ours: Property Rights and Individual Liberty", Ethics, pp.126-41.